

하나 체크카드 개인회원 약관

시행일 : 2026. 9. 14.

제1장 총칙

제1조(용어의 정의)

- ① 회원은 본인회원과 가족회원으로 구분합니다.
- ② 본인회원이란 이 약관을 승인하고 하나카드㈜(이하 "카드사"라 함)에 하나체크카드 또는 하나비씨체크카드(이하 "카드"라 함)의 발급을 신청하여 카드사의 심사를 거쳐 카드를 발급받은 분을 말합니다.
- ③ 가족회원이란 본인회원의 가족으로서 대금의 지급 등 카드이용에 관한 모든 책임을 본인회원이 부담할 것을 승낙한 분으로서 이 약관을 승인하고 카드사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분을 말합니다.
- ④ 본인회원은 본인 및 가족회원(이하 양자를 "회원"이라 함)의 카드에 관한 모든 행위 및 발생한 채무잔액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가족회원은 가족카드의 이용 및 관리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 ⑤ 결제계좌란 회원이 발급받은 카드와 연계되어 카드 이용대금이 결제되는 본인회원 명의의 계좌 혹은 계정을 말합니다.
 1. 본인회원 명의 금융기관의 예금계좌
 2. 금융회사가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 기반 결제계정
- ⑥ 소액신용한도란 예금계좌의 지급 가능 잔액(대출약정계좌는 약정 인출가능 금액 포함) 또는 결제계정의 잔액이 부족할 경우 카드사가 회원의 신용도를 판단하여 신용카드 결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여한 신용공여 한도를 말합니다. 단, 하나비씨체크카드는 소액신용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2장 카드의 발급 및 관리 등

제2조(카드의 유효기한 및 재발급)

- ① 카드의 유효기한은 카드표면에 기재됩니다.
- ② 유효기간이 도래한 카드에 대하여 카드사는 갱신발급 예정일부터 1개월 이전에 회원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회원에게 발급예정사실을 통보하고 통보 후 20일 이내에 회원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새로운 유효기한이 기재된 카드를 갱신 발급하여 드립니다.
- ③ 갱신발급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회원의 경우에는 회원이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갱신 발급합니다.
- ④ 카드가 갱신된 경우에도 계속하여 이 약관이 적용됩니다.

제3조(연회비 및 수수료 등)

- ① 카드사는 카드 이용대금에 우선하여 연회비 및 카드 발급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 ② 제①항의 연회비 및 카드 발급수수료는 회원이 발급받은 카드등급 및 종류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며, 카드사(비씨카드의 경우 카드사 또는 비씨카드㈜)는 사전에 청구내용 및 청구금액을 고지하여 드립니다.
- ③ 카드사는 제휴카드를 포함하여 카드에 따라 별도로 특정서비스가 제공되거나 회원의 선택에 따라 카드사(비씨카드의 경우 카드사 또는 비씨카드㈜) 또는 카드사(비씨카드의 경우 카드사 또는 비씨카드㈜)와 약정된 기관에서 부가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에는 제①항의 연회비 또는 수수료 이외에 별도의 연회비 또는 이용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사전에 그 징수내용 및 징수금액을 회원에게 고지하도록 합니다.

제4조(카드의 관리)

- ① 회원은 카드를 발급받은 즉시 카드서명란에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하며, 카드 표면에 기재된 명의인 이외의 다른 사람이 카드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② 카드의 소유권은 카드사에 있으므로 회원은 이 카드를 제3자에게 대여,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카드를 이용·관리하여야 합니다.
- ③ 회원은 유효기한이 지난 카드 및 갱신·대체·재발급으로 인한 구카드를 이용할 수 없고, 이를 즉시 폐기하여야 합니다.
- ④ 제①항 내지 제③항을 위반하거나 이행을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다만, 회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카드이용 정지, 해지)

- ① 카드사(비씨카드의 경우 카드사 또는 비씨카드㈜)는 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카드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단, 제6호 내지 제8호는 소액신용한도가 부여된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회원의 경우만 적용)
 - 1. 회원으로 가입 시 약정 서류에 필수 기재사항 및 카드발급 자격 관련 정보 등 중요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 2. 미성년자인 회원의 법정 대리인이 카드사에 거래정지를 요청한 경우
 - 3. 카드에 의한 거래가 부정사용 또는 비정상거래로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4. 이민, 구속, 사망 등으로 회원의 채무 변제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5. 회원의 고의·중과실로 인해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법령 또는 이 약관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 6. 다른 채무로 인하여 (가)압류, 가처분, 경매, 기타 강제집행을 당한 경우

7. 카드이용대금(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포함),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대금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연체한 경우
8. 다른 금융기관에서의 연체, 파산 및 개인회생신청, 기타 사유로 회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경우
- ② 카드사는 카드에 의한 거래가 부정사용 또는 비정상거래로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와 카드사 또는 회원이 이용한 업체의 전산망이 해킹을 당하는 등으로 인하여 회원의 신용정보가 유출되는 등의 사유로 회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원의 당해 카드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원은 카드사에 대하여 카드사용의 일시정지 및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④ 본인회원은 가족회원의 동의 없이 가족회원을 해지시킬 수 있습니다.
- ⑤ 1년 이상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카드사는 서면, 자동응답시스템(ARS), 팩스(FAX) 등의 방법으로 회원의 해지의사를 확인 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⑥ 제①항, 제③항 및 제⑤항의 사유로 회원의 카드이용이 정지된 경우에는 회원은 즉시 카드를 폐기하고, 카드사는 그날까지의 채무전액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3장 카드의 이용

제6조(카드의 이용 등)

- ① 회원이 카드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자 할 때에는 국내의 경우에는 카드사 또는 카드사와 제휴한 기관의 가맹점(이하 “국내가맹점”이라 함), 국외의 경우에는 카드사 또는 카드사와 제휴하고 있는 외국기관의 가맹점(이하 “해외가맹점”이라 함)에 카드를 제시하고 매출표에 카드상의 서명과 동일한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의 비대면거래에 있어서 가맹점이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경우이거나 카드의 제시와 서명 생략으로 입을 수 있는 회원의 피해를 카드사 및 가맹점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원은 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구매 또는 서비스 이용 등을 위장한 현금용통 기타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③ 카드사는 회원 및 가맹점의 신용도, 법령 규정, 감독기관의 지시 등을 고려하여 회원의 특정가맹점(국내 및 해외가맹점 포함)에 대한 카드사용 또는 이용한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7조(카드의 해외이용 등)

- ① 카드를 해외에서 이용하거나 또는 무역 외 경비의 지급을 위하여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 등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② 회원의 해외매출에 대한 이의신청 및 책임에 대해서는 해외카드사의 규약에 따르며, 카드사는 회원의 해외매출에 대한 이의신청시 동 규약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제8조(카드의 이용한도)

- ① 회원의 카드이용한도는 카드사가 정하여 카드발급 시 또는 이용대금 명세서 송부 시 통보하며, 동 한도는 이용 당시의 결제계좌의 잔액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② 카드사는 제①항과 관계없이 별도의 신용구매한도를 회원에게 부여할 수 있으며 부여된 한도는 카드발급 시 또는 이용대금명세서 송부 시 통보하여 드립니다.
- ③ 회원은 이용대금이 제①항의 한도 또는 결제계좌의 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②항의 신용구매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9조(현금자동지급기의 이용)

- ① 회원은 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이하 "지급기"라 함)를 이용하여 결제계좌에서 현금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 1. 본인회원 명의 금융기관의 예금계좌 현금인출과 관련하여서는 해당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의 약관이 적용됩니다.
 - 2. 금융회사가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 기반 결제계정은 체크카드를 통해 국내 현금인출 이용이 불가합니다.
- ② 지급기의 가동시간, 1회 한도 및 연속이용 가능 횟수 등 지급기 거래의 일반적인 사항은 카드사 및 카드사와 제휴한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0조(카드이용의 제한)

- ① 회원은 카드를 할부구매,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신용구매한도가 부여된 회원은 신용구매한도 범위 내에서 할부구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② 카드사는 회원의 결제계좌의 상태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통보 없이 회원의 카드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 비밀번호 입력횟수 초과
 - 2. 인출(이체)한도 또는 구매한도 초과
 - 3. 사고신고 계좌
 - 4. 법적지급제한 계좌
 - 5. 지급가능잔액(대출약정 계좌는 대출 미이용 잔액포함) 부족
 - 6. 당일 잔액에 대한 잔액증명이 발급된 계좌
 - 7. 기타 카드사와 제휴한 기관이 정한 지급제한 사유가 발생한 계좌

제4장 대금결제

제11조(대금결제)

- ① 카드의 이용대금은 회원의 결제계좌에서 거래 즉시 인출하거나 차감됩니다.
- ② 회원은 신용구매한도를 이용하여 카드를 이용한 경우 및 실제 거래금액이 제①항의 결제금액을 초과한 경우 등 제①항의 결제방법으로 결제되지 않은 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결제일에 자동대체결제방법 또는 카드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결제하여야 합니다. 대금결제일은 카드사가 정한 결제 가능일 중에서 회원이 원하는 날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③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하거나, 국내에서 해외가맹점을 통하여 이용한 모든 카드이용대금은 마스터, 비자 등 국제카드 브랜드사가 정한 환율에 의해 미달러로 환산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됩니다.

1. 예금계좌가 하나은행인 경우, 카드승인일자에 카드사가 지정한 은행이 고시한 전신환매도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카드승인일에 회원의 계좌잔액에서 지급정지 됩니다. 이후 매출표가 접수되면 국제카드 브랜드사가 정한 환율에 의해 미달러로 환산된 후, 매출접수일자의 카드사 지정 은행이 고시한 전신환매도율을 적용하여 회원의 계좌잔액에서 원화금액을 인출합니다. 매출표가 접수되어 금액이 인출됨과 동시에 지급정지가 해제되며, 지급정지 금액과 인출금액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1회 승인금액 100만원 이상의 거래(단, T&E업종 제외), 또는 카드사가 정한 특정 브랜드 및 상품의 카드이용대금은 카드승인일자에 카드사 지정 은행이 고시한 전신환매도율이 적용되어 카드 승인 시 회원의 예금계좌에서 즉시 인출됩니다.

*T&E업종: Travel and Entertainment 업종, 여행과 여가 관련 업종
(항공, 호텔, 숙박, 렌터카 외)

2. 예금계좌가 하나은행이 아닌 경우, 카드승인일자에 카드사가 지정한 은행이 고시한 전신환매도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카드승인일에 회원의 예금계좌에서 즉시 인출됩니다.
- ④ 해외 현금자동지급기는 예금계좌가 하나은행인 경우 이용 가능하며 모든 카드이용대금은 마스터, 비자 등 국제카드 브랜드사가 정한 환율에 의해 미달러로 환산된 후, 카드승인일자에 카드사 지정 은행이 고시한 전신환매도율이 적용되어 카드 승인 시 회원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됩니다.
 - ⑤ 결제계좌가 결제계정인 경우 해외가맹점 및 해외 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한 카드이용대금은 승인시점에 결제계정의 잔액에서 즉시 차감됩니다. 단, 별도 상품약관 등에서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 ⑥ 제③항~제⑤항의 인출 및 차감금액에는 마스터, 비자 등 국제카드 브랜드사가 카드사에 부과하는 국제브랜드수수료와 국내 카드사가 부과하는 해외서비스수수료가 포함됩니다. 이 경우 국내 카드사의 해외서비스수수료는 국제브랜드수수료를 제외하고 산정됩니다.

제12조(자동대체결제)

- ① 카드사는 제11조 제②항에 해당되는 카드이용대금을 대금결제일에 회원의 지정 금융기관 자

동대체결제계좌(단, 통장분실·도난 기타의 사유로 계좌가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 후의 계좌)에서 예금통장, 지급청구서, 기명날인된 수표 없이 자동으로 인출하여 결제할 수 있습니다.

② 제①항의 자동대체결제계좌가 대출이 가능한 계좌인 경우에는 그 약정한도 내에서 결제계좌 개설기관과 회원이 약정한 출금 우선순위에 의하여 자동인출하여 결제합니다.

③ 이용대금 결제일 현재 잔액(대출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부족으로 카드사의 청구금액 전부를 결제할 수 없는 때에는 이용대금 결제일 이후 매영업일 또는 카드사가 정하는 출금일에 미결제금액(지연배상금 포함)을 제①항 및 제②항의 방법에 따라 인출, 결제금액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④ 위 제①항 내지 제③항에 불구하고, 금융기관 영업시간 이후에 입금된 금액은 자동인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⑤ 카드이용대금 결제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카드이용대금 결제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금융기관 영업일에 처리합니다.

제13조(기한이익의 상실)

① 회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은 당연히 카드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회원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1. 사망으로 회원의 채무 변제가 불가능(90일까지는 지연배상금 미부과)한 경우
 2.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또는 외국인과의 결혼, 연고관계,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하여 외국으로 이주하는 경우
 3. 파산,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경우
- ② 회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당연히 당해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회원은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기한이익 상실일 7영업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이익의 상실일 7영업일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 회원은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7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할부금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총 할부금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2. 회원의 고의·중과실로 카드에 의한 거래가 부정사용 또는 비정상적 거래로 확인된 경우
- ③ 회원에게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하여 카드사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카드사는 서면으로 변제, 압류 등의 해소, 신용의 회복 등을 독촉하고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카드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명시하여 통지하

여야 합니다. 통지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카드사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회원은 카드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제2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다른 채무로 인하여 압류, 경매, 기타 강제 집행을 당한 경우
 3. 카드이용대금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연체한 경우
-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카드사에 대한 채무의 원금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연체 등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이라 합니다) 및 동법 하위규정에서 정하는 사유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카드사는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통지가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회원에게 도달한 경우 회원은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되, 다만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지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10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회원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 ⑤ 카드사가 제4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를 하는 경우 「개인채무자보호법」 및 동법 하위규정에서 정하는 통지 내용, 통지 방법 및 예외사유 등 제반 규정을 따릅니다.
- ⑥ 제2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회원이 카드사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카드사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카드사가 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이자·지연배상금을 받는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카드사가 지정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 때부터 부활됩니다.

제5장 카드부정사용 등에 대한 회원의 책임

제14조(카드이용대금에 대한 이의신청 및 책임)

- ① 회원이 카드이용대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제일로부터 14일 이내(해외사용분의 경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카드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② 카드사는 회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카드발급경위, 카드이용일시, 이용내용, 이용주체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회원에게 서면, 인터넷(회원에 도달된 것이 확인된 경우만 인정) 또는 전화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 ③ 회원이 카드사의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이용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카드사는 분쟁이 있는 금액의 연체를 이유로 회원의 연체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 ④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 카드발급 및 이용과정에서 카드사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카드사는 이용대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 다만, 카드사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에 불복하여 관할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⑤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사결과, 회원에게 책임이 있다고 밝혀질 경우 이용대금이 당초 결제일에 청구된 것으로 간주하여 카드사는 회원에게 지연배상금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결과에 불복하여 관할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5조(카드의 분실·도난 신고와 보상)

① 회원은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즉시 카드사(비씨카드의 경우 카드사 또는 비씨카드(주))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카드사(비씨카드의 경우 카드사 또는 비씨카드(주))는 즉시 신고 접수자, 접수번호, 신고시점 기타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회원에게 알려드리며, 회원은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② 제①항의 절차를 이행한 회원이 분실·도난으로 인한 카드부정사용 금액에 대하여 보상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카드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서면, 유선 등으로 보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원은 분실·도난신고 접수시점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카드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제③항의 각 호를 제외하고 카드사(비씨카드의 경우 카드사 또는 비씨카드(주))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사는 제1항의 신고시점 이전에 발생한 50만원을 초과하는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1만원 이하의 보상처리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카드사는 제②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분실, 도난 신고시점 이후에 발생한 경우를 제외) 회원에게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의 고의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2. 회원이 카드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다음 각목의 경우에 한한다)
 - 가. 가맹점이 서명을 통해 본인확인을 하려 하였으나 회원 본인의 카드 미서명으로 본인확인을 하지 못한 경우
 - 나. 회원이 서명을 하였다고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 회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하는 경우(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때문에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회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카드를 타인(가족, 동거인을 포함한다)에게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5. 회원이 과실로 카드를 노출·방치한 경우(회원의 카드 노출 방치로 인해 가족, 동거인이 카드를 사용한 경우도 포함한다)
6. 회원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의적으로 카드사에 분실·도난 신고를 지연한 경우

④ 제①항 및 제②항에 의한 회원의 분실·도난신고가 카드사의 조사결과 회원의 고의에 의한 허위신고로 판명될 경우 회원은 카드사가 입은 손해 및 조사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16조(위·변조카드에 대한 책임)

위·변조된 카드의 이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한 책임은 카드사(비씨카드의 경우 카드사 또는 비씨카드㈜)에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부정사용에 대하여는 회원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비밀번호의 누설
2. 카드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제17조(카드의 비밀번호 및 면책)

- ① 회원은 카드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비밀번호를 신고하여야 하며, 지급기를 이용하거나, 카드사와 비밀번호를 사용하기로 별도의 약정을 체결한 가맹점에서 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매 거래 때마다 카드사에 신고한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여야 합니다.
- ② 카드사는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거래시 회원이 조작한 비밀번호와 카드사에 신고된 비밀번호가 같음을 확인하고 처리하며, 비밀번호를 본인확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카드거래에서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 등에 대한 책임은 제 15조 (카드의 분실·도난 신고와 보상) 에 따릅니다.
- ③ 회원은 제①항의 비밀번호가 타인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여야 합니다.

제6장 개인정보보호

제18조(신용정보의 제공·활용 및 통보)

- ① 카드사(비씨카드의 경우 카드사 또는 비씨카드㈜)가 이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신용정보는 관련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며, 회원이 제공·활용에 동의한 범위 또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용정보 제공·이용자, 제휴업체와 정보를 교환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 해지한 이후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 이외에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 ② 가맹점과 회원 간에 카드거래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카드사는 회원의 정보를 가맹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회원은 가맹점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③ 카드사(비씨카드의 경우 카드사 또는 비씨카드㈜)는 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정보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정보는 당해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정보업자와 제휴하고 있는 금융회사 등이 금융거래의 설정 및 유지의 판단자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카드의 부정사용 등으로 신용거래질서를 문란케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입혔거나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한 경우
 2. 기타 카드사에 손실을 입힌 경우
- ④ 제③항의 내용에 대하여 회원으로부터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카드사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용정보 제공요건의 충족여부를 재확인하도록 합니다. 이 경우 카드사(비씨카드의 경우 카드사 또는 비씨카드㈜)는 회원에게 이의신청의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⑤ 회원은 정보제공기관에 제공된 자기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실과 다른 정보에 대하여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정정청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9조(변경사항의 통지)

① 회원은 주소, 전화번호, 직장명, 소속부서, 직위, 자동대체결제계좌, 전자우편(E-MAIL), 가족회원의 가족관계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카드사 또는 카드사(비씨카드의 경우 카드사 또는 비씨카드(주))와 제휴한 기관에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동대체결제계좌 변경 시에는 카드사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② 카드사가 과실 없이 회원의 변경된 주소 등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원이 제①항의 통지를 태만히 함으로써 카드사로부터의 통지 또는 송부서류 등이 연착하거나 도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회원이 부담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통상 도착하여야 할 때에 회원에게 도착한 것으로 하여 그 도착으로 인한 법률효과가 발생합니다.

제7장 보칙

제20조(위반시의 책임)

① 카드사와 회원은 이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각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21조(변경승인 등)

①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카드사는 그 내용을 변경약관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기존 회원에 대한 변경약관의 적용 여부, 신·구조문대비표 포함)하고 회원에게 서면,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이용대금명세서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신·구조문 대비표 포함)하여 드립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1. 법령 개정, 제도 개선, 약관 변경권고(명령) 등으로 긴급히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2. 약관 개정이 회원에게 유리한 경우
3. 변경 전 내용이 기존 회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4. 기존 약관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단순한 문구 변경

② 카드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원에게 변경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즉시)까지 홈페이지 게시,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팩스(FAX), 이용대금명세서 중 서로 다른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3개월 이

전부터 매월 알려드립니다.

1. 카드사가 할부수수료율, 연체이자율 등 각종 요율 또는 연회비를 인상할 경우
 2. 카드사가 결제방법, 할부기간 및 횟수 등을 변경할 경우
 3. 신용공여기간을 변경할 경우
- ③ 제2항제2호 내지 제3호의 경우 카드사는 회원에게 개별 통지하고 변경예정일까지 전국적으로 보급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 또는 카드사와 제휴사의 본·지점에 게시하는 방법을 병행합니다.
- ④ 제1항 내지 제2항의 경우 회원이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별도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회원이 변경예정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⑤ 카드사의 사정에 따라 회원의 이용대금명세서 수령 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변경 대상 회원에게 우편, 전자우편, 휴대폰 문자메시지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변경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개별 통지를 하여야 하고, 통지 수령 후 이의제기 기간 내에 회원으로부터 별도의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동 회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용대금명세서의 수령 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이용대금명세서 수령방법의 변경(변경예정 수령방법, 변경예정일자 포함)
 2. 통지 수령 후 2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별도의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회원이 제1호에 대한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사실
 3. 이의제기 기간을 도과한 이후에도 회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이용대금명세서 수령방법 변경이 가능하다는 사실 및 변경절차에 관한 안내

제22조(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 ① 신용한도가 부여된 체크카드의 신용구매한도 이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신용카드개인회원표준약관"에 따릅니다.
- ② 기타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23조(관할법원)

- ① 이 약관에 터잡은 거래에 관하여 카드사와 회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회원의 주소지 또는 카드사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카드사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 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② 할부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의 주소지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